부천시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3월 5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3월 7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13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7년 3월 20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가정복지과장 윤순중)

❑ 제안이유

○ 부천시의 장사문화 발전을 위한 시책수립과 장사시설(화장장, 봉안당 등) 확충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착 및 장사시설의 설치를 촉진 하려는 것임.

❑ 주요골자

○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.(안 제2조)

- 장사시설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장사시설(화장장, 봉안당 등)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기타 장사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항

○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사회·종교·장례 및 교육 분야·시의회의원·소속공무원과 장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,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3조)

○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직무를 통할하도록 함.(안 제4조 및 제5조)

○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소집하도록 함.(안 제6조)

○ 위원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및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7조)

○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장사업무담당과장을 간사로 두도록 함.(안 제8조)

○ 화장 및 봉안의 확산, 기타 장례문화의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9조)

○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0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이제야 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려는 이유는?	○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.
○ 제9조(비용의 보조)는 그 어느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, 지방자치법시행령과도 배치된다고 보는데?	○ 입법취지에 맞게 포괄적으로 규정한 내용임
○ 추모공원조성위원회의 기능이 끝난 시점이 아닌가?	○ 자문 등의 역할이 필요함.
○ “시장 소속하에” “조정” 등의 조문들이 부적절하지 않는가?	○ 답변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 : “수정의결”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부천시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관련 94
의 결 년월일	2007. 3. 22

제안년월일 : 2007. 3. 20

제 안 자 : 행정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(자문기관의 설치)와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에 의하여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, 행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,

○ 위원회 운영과 관련이 없는 비용의 보조를 규정한 조항과 위원회 목적과 기능, 구성 등에 있어 일부 부적절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○ 안 제1조중 위원회를 시장 소속하에 둔다는 규정은 자문기관이 아닌 소속기관으로의 오해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함.

○ 안 제3조 제3항중 위원 위촉대상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 이는 학력선호 등 부적절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수정함.

○ 안 제9조(비용의 보조)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1조(비용의 보조)에서 화장 및 납골의 확산, 묘지면적의 축소, 기타 장례문화의 개선을 위한 조사·연구 등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동 위원회 기능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삭제함.

부천시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부천시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중 “시장 소속하에”를 삭제한다.

안 제2조중 “심의·조정한다”를 “심의·자문한다”로 한다.

안 제3조 제3항중 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”을 “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”로 한다.

안 제5조 “위원장의 직무”를 “위원장의 임무”로 하며, 제1항중 “직무”를 “사무”로 한다.

안 제9조를 삭제한다.

안 “제10조”를 “제9조”로 하며, 안 “제11조”를 “제10조”로 한다.

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『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조례안과 동일함.』

신·구조문 대비표

조 례 안	수 정 안
제1조(목적) 장사문화발전을 위한 시책수립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둔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추모 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둔다.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	제2조(기능) ----------심의·자문한다.
(이하생략)	(이하 현행과 같음)
제3조(구성) ① (생략)	제3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은 사회·종교·장례 및 교육 분야, 시의회의원·소속공무원과 장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	③ ----------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----------.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	제5조(위원장의 임무) ①----------사무----------.
제9조(비용의 보조) 시장은 화장 및 봉안의 확산, 기타 장례문화의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	〈삭제〉
제10조(실비변상) (생략)	제9조(실비변상)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시행규칙) (생략)	제10조(시행규칙) (현행과 같음)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장사문화발전을 위한 시책수립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둔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장사시설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장사시설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기타 장사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은 사회·종교·장례 및 교육 분야, 시의회의원·소속공무원과 장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

④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임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.
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

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

2.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
3.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8조(간사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장사업무담당과장이 된다.

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9조(실비변상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